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528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전시설물을 가리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한 후 가로수 관리청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‘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’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- ‘가로등의 빛’은 시설물이 아니므로 ‘가로등’으로 표기하고, ‘안전시설물을 가리는’의 문구는 의미를 구체화하여 ‘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, 같은 조 제1항 ‘도로표지’로만 된 부분에도 일관되게 ‘가로등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 골자

-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”로 ‘가로등’을 포함하여 수정(안 제8조제1항)
-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” 문구 수정 및 추가(안 제8조제3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3조제9호 중 “가로등“이란”을 “가로등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부속장치(이하
“가로등“이라 한다)”를 “부속장치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도로표지”를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관리청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
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
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-|--|
|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“가로등“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(이하 “가로등“이라 한다)를 말한다.</u></p> |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9. <u>“가로등”이란 ----- 부속장치-----.</u></p> |
| 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</u> <u>로등 및 도로표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
② (생략)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는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관리청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가로등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
제7조제1호가목 단서 중 “생장속도”를 “생장속도, 가로등의 위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도로표지”를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”을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신호등”을 “신호등, 가로등”으로, “안전 등”을 “안전, 빗가림 방지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“가로등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<u>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</u></p> |
| <p>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교목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식재간격은 6~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,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<u>생장속도</u>,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라. (생략)</p> <p>2. ~ 4. (생략)</p> | <p>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생장속도, 가로등의 위치</u>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<u>도로표지</u>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</p> | 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가로등 및 도로표지</u> ----- -----</p> |

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삭 제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 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, 통행공간의 확보, 전송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

② ~ ⑥ (생략)

-----.

③ -----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

-----.

-----.

제11조(가지치기) ① -----

-----.

----- 신호등, 가로등 -----

----- 안전,
빛가림 방지 등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